

## ■ 「직불카드 회원약관」 개정대비표

### 1.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 1 조 (회원)~제 2 조(카드의 발급) (생략)</p> <p>제 3 조 (카드의 관리) ①~② (생략) <u>③ 전 각항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.(삭제)</u></p> <p>제 4 조(제수수료 등) (생략)</p> <p>제 5 조 (비밀번호) ①~③ (생략) <u>④ 은행은 제②항의 카드이용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동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(삭제)</u></p> <p>제 6 조(카드의 입출금기 이용)~제 12 조(카드의 분실·도난) (생략)</p> <p>제 13 조 (면책) <u>회원 이외의 제 3 자가 카드를 위·변조하여 카드를 사용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 다만, 은행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</u> 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. 직불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</p>	<p>제 1 조 (회원)~제 2 조(카드의 발급) (좌동)</p> <p>제 3 조 (카드의 관리) ①~② (좌동) (삭제)</p> <p>제 4 조(제수수료 등) (좌동)</p> <p>제 5 조 (비밀번호) ①~③ (좌동) (삭제)</p> <p>제 6 조(카드의 입출금기 이용)~제 12 조(카드의 분실·도난) (좌동)</p> <p>제 13 조 (면책) <u>① 은행은 카드의 위·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. 다만,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.</u></p>	<p>③항삭제함</p> <p>④항삭제함</p> <p>전자금융거래 약관으로써「전금법」제9조에 따른 3종의 전자금융거래사고 유형 중 일부를 누락함</p>

<p>제 14 조 (변경사항의 통지)~ 제 15 조 (회원자격정지 및 탈회) (생략)</p> <p>제 16 조(약관변경 승인 등)</p> <p>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 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회원에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 등 전자적 장치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,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제 1 항의 규정에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“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는 내용을 통지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은 회원이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1. 제3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</p> <p>2. 회원이 카드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/p> <p>③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 3 자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.</p> <p>제 14 조 (변경사항의 통지)~ 제 15 조 (회원자격정지 및 탈회) (좌동)</p> <p>제 16 조(약관변경 승인 등)</p> <p>약관의 변경은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 제 29 조(약관의 변경)에 따릅니다.</p>	<p>조항”에 해당하므로, 누락된 전자 금융거래사 고 유형을 추가하여 개정함</p> <p>“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 제29조를 따름”</p>
--	---	---

<p>④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<u>교부하여야 합니다(삭제)</u></p> <p>제 17 조(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~제 19 조(관할법원)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 17 조(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~제 19 조(관할법원) (좌동)</p> <p>- 부칙 -</p> <p>이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>신설</p>
---	---	-----------

2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